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직제규정 등 일부개정에 따른 사규 당연개정 시행 알림

- 1. 관련근거
 - 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
 - 나. 법무처-2009호('16.7.12.) 『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부서별 운용사규 당연개정 사항 제출』
- 2. 직제규정 등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별 운용사규의 당연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 - 가. 주요 개정 내용
 - 직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사항 반영
 - 나. 시행사규

사 규 명	시행번호	시행일	소관부서
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18건	타규정 개정 규정 제886호	2016.7.26.	안전방재처 등

다. 사규별 개정사항 확인 : 스마트 > 업무지원 > 전자사규

- 붙 임 1. 당연개정 사규현황 1부.
- 2. 사규별 일부개정(안)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52, 라1~라3

과장 **도금수**

처장 **하성우**

실장 07/25
김병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2163 (2016.07.26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전화 02-6311-2037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